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3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과징금
1.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6호	5백만원
2.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7호	
가. 법 제33조제1호·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		1천만원
나. 법 제33조제2호·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		5백만원